

모범영업소 표지판(제6조제2항 관련)

1. 규격 및 재질

- 가. 규격: 50cm(가로)×30cm(세로)
- 나. 재질: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인쇄
- 다. 고정틀 등은 별도 부착 가능

2. 표지 도안

가. 도 안

지정번호:	
지정년월일:	
모 범 영 업 소	
상호: _____	
위 업소는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른 모범영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.	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직인

나.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, 상호는 황색으로 한다.

다. 그 밖에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다.